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 현원 없는 정원 감축을 위하여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지도직공무원(지도관·지도사) 비율 조정(별표 2)

나.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총괄표

구 분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지도
현재	782	1	4	37	181	215	200	113	31
조정	777	1	5	36	181	214	199	111	30
증감	△5	-	+1	△1	-	△1	△1	△2	△1

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총괄표

구 분	계	본청	평창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재	782	401	17	192	21	151
조정	777	398	17	191	21	150
증감	△5	△3	-	△1	-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634호, 행정과-9784(2024. 4. 19.)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7855(2024. 5. 20.)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7855(2024. 5. 20.)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7850(2024. 5. 2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실-7973(2024. 5. 22.)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8095(2024. 5. 24.)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2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5명”을 “760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5%이내	24%이내	30%이내	27%이내	12%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8% 이내	92%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7	77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6	746				
4급	5	4		1		
4~5급						
5급	36	19	2	6	1	8
6급 이하	705	705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2			2		
지도사	24	24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8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6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77명</u>----- -----.</p> <p>1. ----- <u>760명</u></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